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20 - 13 - 073호

안 전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 3. 1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금액 : 5,000,000원
-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I.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마진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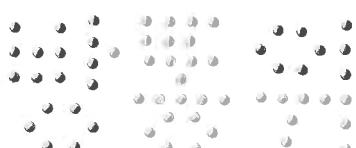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전체 매출				
관련 매출				
관련없는 매출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9.3.7.)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거래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2019. 3. 7. 현재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 정보	(필수)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집주소, 은행, 계좌번호, IP			건
탈퇴 회원*	분리보관대상	(필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집주소, 은행, 계좌번호, IP ※ '19. 3. 7. 파기 : 1,463건		건
합계				건

*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있으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한다고 되어 있음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개인정보 유출 경과 및 대응



- 2019.1.21. 21:30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조회됨을 피심인에게 연락
- 2019.1.22. 17:07 개인정보 유출 신고
- 2019.1.22. 17:24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

2) 개인정보 유출 규모

피심인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이용자 개인정보 4,882건이 타인에게 노출되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이용자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4,882건

3) 유출 경로

피심인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입금/출금 신청 메뉴의 기능 테스트(2018.12월~2019.1월) 중 사용자 인증 기능을 주석 처리한 후 복구하지 않아 2019. 1. 21. 이용자가 자신의 입출금 내역 확인 시 회원의 입출금 내역(4,882건)이 조회되었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19. 3. 7. 현재 방통위 현장조사 전까지 일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adm/main.php)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1차, 2차)만을 이용하여 접속한 사실이 있다.

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피침인은 홈페이지 이용자 중 2019. 3. 1. 이전에 탈퇴처리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599건을 파기하지 않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DB 테이블(테이블명:)에 저장·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4. 2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침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침인은 2019. 5. 7.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



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침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침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피침인이 탈퇴처리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599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을 위반한 것이다.

< 피침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2호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패스워드만을 이용토록 하여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④)
	미파기	§29①1호	-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있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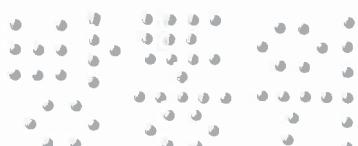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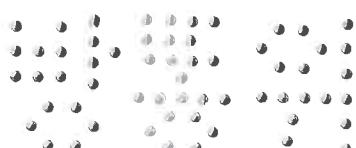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심인이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호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5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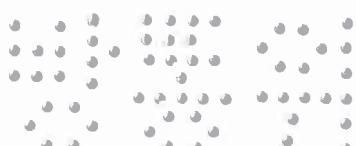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3월 11일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석 진



위 원

허 옥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김 창 룡

